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: ①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② 오기정정

□ 효력발생일 : 2026. 3. 27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2. 27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2. 28. 기준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 경력사항 오기정정	- 주식부책임운용역: 김성현 경력: <u>18.05~현재 트러스톤 자산운용 주식운용AR본부 16.03~18.04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팀</u>	<u>2026. 2.28. 기준</u> 주식부책임운용역: 김성현 경력: <u>22.01~현재 트러스톤 자산운용 주식운용AR본부 21.10~22.01 트러스톤자산 운용 리서치팀</u>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6. 2. 28. 기준</u> <u>2026. 2. 27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 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 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 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 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 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 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 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 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
		<p>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</u>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다만, <u>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</u>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<u>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</u>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	<p>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<u>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</u>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<u>(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)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
--	--	---	--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</p>	<p>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	<p>-</p>	<p><u>2026. 2. 28. 기준</u></p>
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	<p>-</p>	<p><u>2026. 2. 28. 기준</u></p>